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83 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남인순·강선우·박성준

송재호 • 우원식 • 윤재갑

이상직 • 이성만 • 야정비

이용빈 · 전혜숙 · 허종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·의료기관 등의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,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·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, 이들의 조제업무,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, 약사·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·한약사 및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·의약외품·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).
- 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·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함(안 제4조제4항 등).
- 다.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·방역물품등 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함(안 제70조제1항제2호).
- 라.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·한약사·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0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10호 중 "약품 등"을 "의약품·의약외품·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(이하 "의료·방역물품등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의료인단체"를 "의료인단체,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국 및 약사·한약사 관련 단체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의료인 등"을 "의료인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의료기관의 장 등"을 "의료기관의 장,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·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(이하 이 조에서 "의료인등"이라 한다)"으로, "진단 및 치료"를 "진단, 치료, 조제 및 의료·방역물품등의 제공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등"을 "의료인등"으로, "진단·관리·치료"를 "진단, 관리, 치료, 조제 및 의료·방역물품등의 제공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"을 "의료인등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의2 중 "의약품·장비 등"을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8호 중 "의약품 및 장비 등"을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의2 중 "의약품"을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한다.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

3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·한약사 및 약국개설자

제34조제2항제4호 중 "의료용품"을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한다. 제40조의 제목 중 "의약품 및 장비"를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의약품 및 장비 등"을 "의료·방역물품등"으로 한

제40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"의약품"을 각각 "의료·방역물품등" 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제2호 중 "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"를 "등에 대한 진료, 조제 또는 의료·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발생 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의료기관"을 각각 "의료기관 또는 약국"으로 한다.

제70조의3의 제목 중 "개설자"를 "개설자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의료인"을 "의료인·약사·한약사"로, "의료기관"을 "의료기관·약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 (생 략)	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	②
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	
야 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	10
위한 <u>약품 등</u> 의 비축	<u>의약품</u> ·의약외품·의료
	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
	한 물품 및 장비(이하"의료
	·방역물품등"이라 한다)
11. ~ 17. (생 략)	11. ~ 1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4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	
및 <u>의료인단체</u> 와 감염병의 발	의료인단체, 「약사법」에 따
생 감시 • 예방을 위하여 관련	른 약국 및 약사·한약사 관련
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	<u>단체</u>
제5조(<u>의료인 등</u> 의 책무와 권리)	제5조(<u>의료인등</u> 의 책무와 권리)

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가 있고, 감염병 환 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 상받을 수 있다.

-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・관리・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.
- 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 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・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의 수립 등) ① (생 략)

①
의료기관의 장, 「약사법」에
<u>따른 약사·한약사 및 약국개설</u>
자 등(이하 이 조에서 "의료인
등"이라 한다)
진단, 치료, 조제 및 의료・방역
물품등의 제공
② 의료인등
진단, 관리, 치료, 조제 및 의료
·방역물품등의 제공
③ 의료인등
10 - / 이 시 비 이 이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

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
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· 2. (생 략) 1.
 2의2. 감염병 대비 <u>의약품·장</u> 2의 1.
 1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.
 3 ~ 6. (생 략) 3.
 3 ~ ⑤ (생 략) 3.
 1 (생 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생 제9조)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- 1. ~ 7. (생략)

략)

- 8.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·치료 <u>의약품 및 장</u> <u>비 등</u>의 사전 비축,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
- 8의2. 제40조의2에 따른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 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- 9. ~ 11. (생략)
-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

 1.·2. (현행과 같음)
2의2 <u>의료・방역물</u>
프드
<u> </u>
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1. ~ 7. (현행과 같음)
8
의료·방역
물품등
8의2 <u>의료·</u>
<u> 방역물품등</u>
9. ~ 11. (현행과 같음)
3. 11. (もも) (もも)
레10구(ㅋ 바이 지그이므키) ①
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-
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-
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-
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-

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② • ③ (생 략)

- 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
 -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~ 3. (생 략)
 - 4. <u>의료용품</u>의 비축방안 및 조 달방안
 - 5. · 6. (생략)
 - ③ ④ (생 략)
- 제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<u>의약품 및 장비</u>의 비축)
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예방·치료 <u>의약</u>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
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·한
약사 및 약국개설자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
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의료·방역물품등</u>
5. • 6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
비한 <u>의료·방역물품등</u> 의 비
축) ①
의료·방역물품등

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 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 다.

②·③ (생 략)

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)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 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 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 위 등 분배기준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할 수 있다.

제70조(손실보상) ① 보건복지부 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 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 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.

- 1. · 1의2. (생략)
- 2.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의료・방
역물품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
분배기준)
<u>의료·방역물품등</u>
제70조(손실보상) ①
,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2
등에 대한 진료, 조제 또는

실

3. 이 법에 따른 <u>의료기관</u>의 폐 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

4. • 5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)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의료·방역물품등의 제공 등
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발
<u>생한</u>
3의료기관 또는
약국
<u>의료기관 또는 약국</u>
4.•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
<u>개설자 등</u> 에 대한 재정적 지
원) ①
의료인·약사·한약사
의료기관·약국
② (현행과 같음)